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등 신설 〉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19호)

2025. 1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등 신설	2
2. 개정안 부칙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5. 10. 30.
3. 회 부 일 : 2025. 10.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신고 의무, 축소·은폐 금지,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개선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점차 많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및 캐나다의 교육 분야에서 운용되고 있는 접근 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교원에 대한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교원에게 접근 금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등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해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6조의2(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등) ① 피해교원은 제20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경우 법원에 제2항 각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청구 받은 법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게 잠정적

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조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피해교원에 대한 침해행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교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근무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교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및 학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피해교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잠정조치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잠정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행한 범죄 행위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와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관련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지위법」 제19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행한 다음의 행위 - 범죄 행위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학생(「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	보호자 등(「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	기타(「교원지위법」 제20조제4항)
- 학교에서의 봉사 /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 학급교체 / • 전학 - 퇴학처분	- 서면사와 및 재발방지 서약 -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가능

-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2021년 2,269건, 2023년 5,050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24년에는 816건 감소하였으나 4,234건 수준이며, 2025년 1학기에는 2,189건으로 나타남.

[교육활동 침해행위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1학기
교육활동 침해 건수	2,269	3,035	5,050	4,234	2,189

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

자료: 교육부

- 이에 개정안은 지속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조치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받는 교원이 법원에 잠정조치(침해행위 중단 서면 경고, 피해교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개의 잠정조치는 병과될 수 있으며,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2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함.

- 현행법에 따른 학생에 대한 조치 중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을 통해 피해교원과 침해 학생이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으나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또는 전기통신의 방식으로 추가적인 침해행위가 발생

할 수 있고,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이행되어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잠정조치를 통해 침해행위의 중단을 촉구하고 침해행위 이후 최대 9개월 동안 피해교원과 침해행위자를 분리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법률 중 잠정조치를 규정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함)」의 내용¹⁾을 고려할 때 조치의 이행 확보 등을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한

1)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음.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것으로 보임.

□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규정된 잠정조치의 ② 부과, ③ 통지, ④ 기간 등은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 내용과 유사함.

□ 다만 ① 잠정조치 청구의 경우, 개정안은 피해교원이 직접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스토킹처벌법」은 스톱킹범죄 조사와 연관되어 기본적으로 검사가 법원에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되, 피해자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차이가 있음.

개정안은 잠정조치가 필요한 피해교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교원이 직접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잠정조치 청구와 관련한 절차 이행 등이 필요하고,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른 침해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는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²⁾ 「스토킹처벌법」의 절차를 참고하여 학교의 장이

2) 「교원지위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직접 또는 피해교원의 요청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⑤ 개정안은 잠정조치의 청구, 부과, 통치, 기간 이외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의 청구 등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은 ⑥ 잠정조치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제10조제1항), 잠정조치 집행자가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스토킹행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제10조제2항), 피해자 등이 주거 등을 옮긴 경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그리고 ⑦ 스토킹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⑧ 잠정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제12조 및 제15조), ⑨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0조제2항).

□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는 검사의 스톱킹범죄 조사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잠정조치와 차이가 있으나,

피해교원과 침해행위자의 잠정조치 변경 신청, 침해행위자의 잠정조치 불복절차, 침해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내용 및 불복절차 고지 등 잠정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개정안의 잠정조치에 따르면 최대 9개월 동안 침해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 대해 피해교원으로 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가 부과될 수 있는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학교에서의 학습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침해학생의 학습권과 피해교원의 보호를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잠정조치 내용 비교]

구분	「교원지위법」 개정안	현행 「스토킹처벌법」
① 조치 청구	제26조의2(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등) [제1항] · <u>피해교원</u> 은 ·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u>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u> 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경우 ·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 가능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제1항] · <u>검사</u> 는 · <u>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u> · <u>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u> 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 가능 * [제2항] · <u>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u> 은 ·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 요청, 관련 의견 진술 가능</u>
② 조치 부과	[제2항] · 법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u>피해교원 보호</u>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결정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게 잠정조치 가능 - 피해교원에 대한 침해행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피해교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근무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교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및 학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¹⁾ 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각 잠정조치는 병과(併科) 가능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1항 및 제2항] ·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결정으로 스톱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 가능 - 피해자에 대한 스톱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 ¹⁾ 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각 잠정조치는 병과(併科) 가능
③ 조치 통지	[제3항] · 법원은 잠정조치를 한 경우, · 피해교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함	[제5항] ·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 · 검사,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④ 조치 기간	[제4항] · 잠정조치 기간은 최대 3개월 · 다만, 법원은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제7항]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 기간은 최대 3개월 ·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⑤ 위임	[제5항] · 잠정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

구분	「교원지위법」 개정안	현행 「스토킹처벌법」
⑥ 조치 집행	-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제1항] ·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 <u>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음</u> [제2항] · 잠정조치 결정 집행자는 <u>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u>하여야 함 [제3항] · <u>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u>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후 <u>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주거 등을 옮긴 경우</u>,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u>변경 신청</u> 가능 [제4항] · 잠정조치 결정 집행자는 변경 결정에 대해 <u>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u>하여야 함
⑦ 조치 변경	-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제1항] · <u>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u>은 · 잠정조치 결정의 <u>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u>을 법원에 <u>신청</u> 가능 [제2항] · <u>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u>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u>종류의 변경</u>을 <u>청구</u>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u>취소</u> 청구 가능 [제3항] · 법원은 <u>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이나 제2항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u>취소, 기간 연장, 종류 변경</u> 가능 [제4항] · 법원은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종류 변경을 하였을 때, 검사, 피해자, 스톱킹행위자 등에게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함 [제5항] · 잠정조치 결정은 스톱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효력 상실
⑧ 항고, 재 항고	-	제12조(항고) [제1항] · <u>검사, 스톱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u>은 · 잠정조치 결정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항고</u> 가능

구분	「교원지위법」 개정안	현행 「스토킹처벌법」
		-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제2항] •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함 제15조(재항고) [제1항] • 항고의 기각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u>재항고</u> 가능
⑨ 벌칙	-	제20조(벌칙) [제2항] • <u>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u>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주: 1)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1.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 중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유사한 부분만 비교하여 정리(‘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부분은 제외)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함. - 다만, 잠정조치 청구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청구권자를 당사자인 피해교원이 아닌 학교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6조의2제1항 “피해교원” → “학교장” - 또한, 학생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는 학습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학생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6조의2제1항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게” → “보호자 등에게”
○ 대전광역시교육청: 일부수정 -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잠정조치의 대상이 학생일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을 보호자 등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함. 특히, 피해교원의 근무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는 사실상 해당 학생의 등교를 불가능하게 하여 학습권의 본질적 부분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 또한, 최대 3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학생에게 학교 접근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누적된 학습 결손을 초래하여 잠정적 조치의 제도적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존재함.
○ 경기도교육청: 이견없음 -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를 입고 있는 교원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함. 다만 잠정조치의 필요성, 긴급성, 침해의 최소화 측면 등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견없음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즉각적 분리 및 강력한 제재 장치 마련은 교원 안전과 교육정상화에 필수적임. 법체계상 가능하다면 벌칙조항 마련하여 실효성 보완이 필요함.
○ 법무부: 신중검토 - 교원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잠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바, 청구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객관적 판단 및 절차적 정당성 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 현행법상으로도 퇴학처분 등 강한 제재조치까지 가능하므로 중복 제재의 우려가 있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잠정조치도 가능한 바, 보충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 학생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 있음.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등을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이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만 규정함.
- ☐ 그러나 피해교원의 잠정조치 청구와 교육활동 침해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 대한 잠정조치 적용 시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9